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배준영 · 최은석
엄태영 · 임종득 · 김장겸
서명옥 · 강선영 · 김희정
서일준 · 김대식 · 나경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.

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·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,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.

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.

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

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.

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,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·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할 도모하고자 함(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).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 제목 중 “신기술사업금융업자”를 “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개인인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
2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3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4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대책임 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<u>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</u> 준 수사항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5조(<u>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</u> 준수사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</u> <u>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</u> <u>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</u> <u>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개인인</u> <u>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</u> <u>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</u> <u>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</u> <u>지 아니하다.</u> 1. <u>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</u> <u>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</u> <u>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</u> <u>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</u> <u>하게 한 경우</u> 2. <u>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</u> <u>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</u> <u>경우</u> 3. <u>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</u> <u>한 경우</u>

	<u>4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</u> <u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</u>
--	---